

긴급입찰공고 사유서

1. 용역 개요

- 가. 용역명: 몽골 쿠싱벨리 신준모드 스마트 도시 기본계획 수립
- 나. 용역기간: 계약일로부터 240일
- 다. 사업예산: 금 481백만원 (부가가치세 포함)

2. 긴급입찰공고 사유

가. 사업의 성격

- 본 용역은 해외건설촉진법 제15조의4 및 국토부훈령 제1151호 제8조제4항에 의거, 우리기업의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진출 지원을 위해 수행하는 용역임
-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해외에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확산하기 위해 「K-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」을 시행

나. 긴급입찰 사유

- 본 사업은 협력국 정부를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정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는바, 사업수행기관을 조속히 선정하고 사업을 착수함으로써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여야 함
- 조속한 과업성과품 제출 및 국가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하여 **공고기간 단축 필요**

3. 근거법령

-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(입찰공고의 시기)
(제4항)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.
 1.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
 - 1의 2.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**
 2.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 3.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·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4.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
- 국가계약법 시행령 관련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
 - 가. 주요내용(붙임 참조)
 - 1) 유찰 후 수의계약 및 대가지급 관련 사항(국가계약법 시행령 관련)
 - 2) 입찰진행 및 조달기업 지원 방안(기획재정부 지침 관련)
 - 나. 적용기한 : 2022.12.31.까지(기존 : 2022.06.30.까지)
 - (긴급입찰) '22.12.31.까지 모든 경쟁입찰은 시행령 제35조제4항 1의2호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긴급입찰로 발주 가능